

영암읍 종합감사 결과

I. 감사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부분 시정·개선토록 하여 군민 불편 해소
- 수입, 지출,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방만하고 낭비적인 재정운영 관행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예산절감 유도
- 복지대상 관리 및 자원배분 실태 점검으로 중복·누락·편중 지원을 방지하여 역차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군민행복 실현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영암읍
- 감사기간 : 2017. 6. 27 ~ 2017. 6. 30(4일간)
- 대상기간 : 2015. 6. 23 ~ 2017. 6. 26(2개년)
- 감사자 : 기획감사실장 외 6인

3. 감사중점사항

- 공사·구매 계약체결 및 대가 지급의 적정성
- 기획, 총무행정, 문화 관광 등 일반행정 추진사항
- 농정업무, 지역경제업무 및 산불예방 대책 추진사항
- 복지행정 추진실태 및 관리의 적정성
- 소규모사업 및 각종 공사 시공의 적정성 여부
- 생활민원 및 각종 민원처리 실태 확인
- 각종 세금 과세자료 누락여부 확인 등

4. 주요위반사항 요약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기획·민원 일반행정	비밀문서 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II급 비밀 7건 중 1건(관리번호 71)은 예고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파기하지 않았고, 3건(관리번호 78, 79, 80)에 대하여 인사이동으로 비밀문서를 인계·인수하였음에도 비밀열람기록전에 열람사항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비밀문서가 배부되었음에도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운영하여 보안진단서에 의거하여 기록유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p>【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45조, 총무과-1189(‘17.01.16)호】</p>
	민방위대 자원관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도 민방위대 편성결과 제출(안전건설과-5060호(2015.12.11) 공문에 의거 30개대(지역 23, 직장 7) 941명(지역 383, 직장 558)을 민방위대로 편성하고, 영암읍-560(2016.1.13)호로 민방위대 편성결과를 보고하였으나, 리 민방위 대장과 소속 민방위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를 통지하지 않았음. <p>【민방위기본법 제20조】</p>
	민원서류 반려 시 이의신청 미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를 반려 처분하면서 민원인에게 구제 절차를 명시하지 않고 통지한 사실이 있음 <p>【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p>
	주민등록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위반기간 착오계산 및 과태료 미감경 등으로 이경석 외 4인에 대하여 총 104,000원의 과태료를 과다부과하였으며, 조규진 외 1인에 대하여 총 14,000원의 과태료를 과소부과한 사실이 있음 <p>【주민등록법 제16조,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8조】</p>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기획·민원 일반행정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처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재발급 사유가 “분실”인 김소정 외 7명에 대하여 1건당 수수료 5,000원을 징구하여야하나 면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구하고 징수하지 않았고, 김유실 외 3인에 대하여 수수료 5,000원을 징수하였으나 수납처리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p>【주민등록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p>
세출분야	우편요금 가산금 납부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납우편요금을 납부함에 있어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여 발생된 미납요금에 대한 가산금(2,880원)에 대해서는 회계 관계 직원이 변상하여야 함에도 공공운영비에 포함 지급하여 지출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p>【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p>
	관외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가족관계업무 추진에 따른 관외여비를 지급하면서 사업목적에 일치하지 않는 출장 총 2회 100,000원 여비를 지급하였고, 총 9회에 걸쳐 교통비를 잘못 계상하여 실제 관외출장여비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p>【지방재정법 제 47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p>
농업분야	가축방역약품 공급 및 보관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제역 백신(영세농) 공급분에 대해 수불대장을 비치 수급상황을 관리함은 물론 ‘15~16년도는 관내 사육하는 소규모농가(50두이하)에만 배분해야 함에도 구제역 백신 배분내역표에 농가 서명만 받고 백신을 공급하고 있으며, 냉장고의 약품보관 상태도 구제역 백신, 탄기, 아까바네, 이글록시졸 등 가축 약품 외에 별도 냉동고에 생닭, 생수 등을 보관하고 있는 등 가축방역 약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p>【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p>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농업분야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및 발급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접수시 취득대상자가 농업경영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취득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 농지에 대하여 주말·체험영농으로 처리함에도 2016년 3건 1,523.6m²을 농업경영으로, 2017년 1건, 316m²는 주말체험영농으로 농업경영계획서가 불필요함에도 첨부하여 발급 처리한 사실이 있음. 【농지법 제 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요청 제7조】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등 사후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각종 농업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시설물 지원 후 사후관리 기간(5년)중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설물 및 농기계장비등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대장 비치 및 년1회이상 활용사항 점검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영암읍에서는 2015년~2016년까지 지원된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 다목적소형농기계사업,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등에 대해 당해년도 이후 2016년~2017년 현재까지 점검 관리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세무분야	취득세(건축물) 과세자료 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의 경우 6개월)이내에 그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토건설(주)와 10명이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법정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취득세 과세자료를 군에 제출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지방세법 제20조】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세무분야	주민세(재산분, 법인균등분) 과세자료 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암군사무분장 규정에 의거 읍면에서는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미신고 납부한 6개 사업장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하여 주민세(재산분) 10건 4,469,400원과 주민세(법인균등분) 3법인 5건 275,000원 등 총15건, 4,744,400원이 누락되어 과세대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음. <p>【재무과-17483(2015.7.13.)호, 재무과-17115(2016.7.14.)】</p>
사회복지 분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여부 확인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참여신청서 접수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참여신청자 자필서명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접수하여야 함에도, 영암읍에서는 2017년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총 76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접수하여 동의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p>【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및 제16조】</p>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구비가능서류 요청 및 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권 신청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설명을 듣고 본인 동의 서명을 제출하여 관련 서류를 징구하지 않아야 함에도, 2015년부터 현재 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101가구에 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구비가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의 서류를 신청 가구별로 직접 발급받도록 하여 징구한 사실이 있음. <p>【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건설도시 분야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준공처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암읍에서는 영암 회문리 농경지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본 설계내역에 코아채취 2개조를 반영하였으나 1개조만 시행한 채로 준공처리 되었고, 이에 따라 공사감독은 준공전 설계 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 계약금액대로 집행하여 제작비를 포함한 총 금액 113천원의 사업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2항】
	건설 폐기물처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암읍에서는 망호리 후정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업지구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폐콘 및 아스콘) 37.0톤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및 처리 확인을 하지 않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사전승인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암읍에서는 『영암 송평3리 농로포장공사』 외 8개 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전승인 없이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 1인을 2개 현장 이상에 중복배치하는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